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8
----------	------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다. 위탁기간 : 3년(2024. 10. 15. ~ 2027. 10. 14.)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172㎡, 건축면적 3,871㎡(지상 4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의상,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1명 (센터장, 관리팀, 교육팀, 취·창업팀)
- 현장사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금1,107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579백만원, 운영비 365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13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권고(2024. 3.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기간 (21.10.15~24.10.14)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12조제3항1)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 생활문화교육 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및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2항2)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신설(2024.4.4.시행) “재위탁” 정의 정비 및 재계약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024.4.4.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조항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삭제하되 재계약 횟수 1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한 조례」 제4조제4호4) 등에 따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초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였으나 1999년 7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2년 동부여성발전센터, 200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2004년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순서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현황

-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202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2023.12.기준)

소재지		면적(m ²)		연간사업비(천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마포구 토정로 35길 17		3,871m ² (지상4층~지하1층)		1,107백만원 ('24년 기준)		'21.10.15~'24.10.14 (개관일: '86.12.16)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인력구성(명)		계		센터장		팀장		직원	
		11		1		3		7	
교육운영						취·창업지원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구직자(명)	취·창업(명)	취업률(%)	
교육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교육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4,244	3,296	77.7	1,548	1,366	88.2	1,169	519	44.4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5.14., 2020.7.16., 2021.5.20., 2024.3.15>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

구분	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03.10.15.~'06.10.14.	(사)청년여성문화원	신규위탁(공모)
2차	'06.10.15.~'09.10.14.	(사)청년여성문화원	재위탁
3차	'09.10.15.~'12.10.14.	(사)청년여성문화원	재위탁
4차	'12.10.15.~'15.10.14.	(사)청년여성문화원	재위탁
5차	'15.10.15.~'18.10.14.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신규위탁(공모)
6차	'18.10.15.~'21.10.14.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재위탁
7차	'21.10.15.~'24.10.14.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3항⁵⁾ 및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출되는 ‘운영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 2023년 운영평가결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요성과	· 콘텐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 분야 기관 특화전략 우수함 · 유관기관 네트워크 취·창업연계 활동 추진강화
개선과제	· 직원역량강화 등 조직문화 조성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 등 기관역량 강화 제고 · 50~60대 이상 연령대 위주 취업 성과한계 · 중장기발전계획 및 사업과제 등 센터 중점사업 방향 재정립 필요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5개소 전체 평균(83.1점) 보다 낮은 80.14점의 종합운영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센터 역량과 사업계획 등을 수정 보완하여 충실한 위탁사무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직관리 역량 항목 또한 낮은 평가를 보여 「민간위탁조례」 제15조제9항에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⁶⁾ 번아웃예방과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⁷⁾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출처: 2023년도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결과서, 22p.

8-2. 근무환경 개선 노력(5)/ 1) 근무환경 개선 노력(3)

평가등급	B0	평가점수	1.80
-------------	-----------	-------------	-------------

<p>평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 예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안식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음 ○ <u>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하나,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u>
--

2) 직원 퇴사율(2)

구분	직원 퇴사율(%)	점수
중부여성발전센터	33.65	1.00
여성발전센터 평균	27.71	1.40

[그림 1] 2023년 운영평가결과_최종결과

I. 최종결과

등급	B	총점	80.14
평가지표	방법	배점	점수
1. 기관운영 역량	정성	10	7.00
2.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정량 / 정성	25	18.50
3. 이용자 만족도	정량	10	8.64
4. 집행절차 준수 노력	정량	10	8.20
5. 기관 특화 전략	정성	10	10.00
6.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정량 / 정성	10	6.90
7. 유관기관네트워크	정성	10	9.00
8. 조직관리 역량	정량 / 정성	15	9.90
9. 가점	정량 / 정성	5	2.00
10. 감점	정량 / 정성	-5	0.00
총점		100	80.14



-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어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하나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음.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시 설 형	재 위 탁	3년	적정 (권고)	- 센터 이용자 특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필요 - 권역별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5 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 합운영방안 등 마련 필요

3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8)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9)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10)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
- 8)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9)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특수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11)에서 시장의 사무인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운영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향후 센터 역량과 사업계획 등을 수정 보완하고 조직역량관리를 위한 직원소진 예방과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에 사전에 위탁 공모에 대한 홍보 등 해당 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탁체 참여가 필요해 보임.

1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0.7.16., 2021.5.20>

붙임 1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현황(5개소)

구분	동부여성 발전센터	서부여성 발전센터	남부여성 발전센터	북부여성 발전센터	중부여성 발전센터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 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57㎡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설립	'02.5.1.	'97.12.03.	'79.10.26.	'89.9.8.	'86.12.16.
운영 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 법인 (대표)	레마학원 (윤원영)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장만희)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신상아)	(사)한국여학사 협회 (오민화)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안인숙)
위탁 기간	'23.10.01. ~ '26.09.30.	'24.03.01. ~ '27.02.29.	'22.05.01. ~ '25.04.30.	'22.05.01. ~ '25.04.30.	'21.10.15. ~ '24.10.14.
인력	14명 *여성창업플라 자 인력(2명) 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4 예산 (백만원)	1,814백만원	1,172백만원	1,274백만원	1,295백만원	1,006백만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88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4. 10. 15. ~ 2027. 10. 14.)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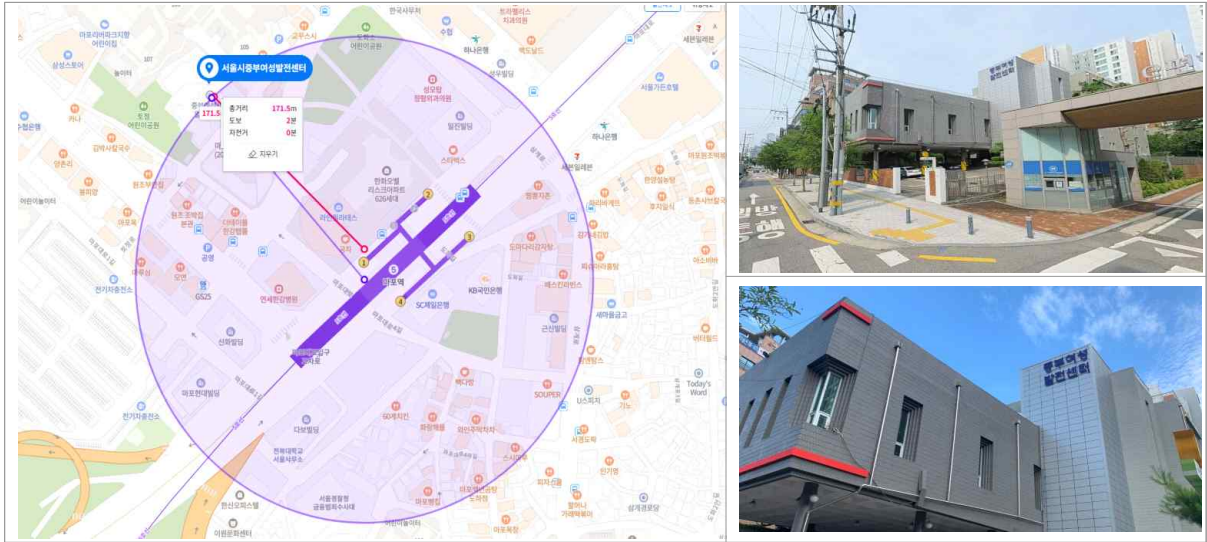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 규 모 : 대지 2,172㎡, 연면적 3,871㎡(지상 4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1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3명, 교육팀 4명, 취·창업팀 3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07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579백만원, 운영비 365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13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3.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안다연(☎ 2133-5022)